

교직원 장례지원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.)의 교직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관성 있는 장례가 치뤄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장례구분) ① 장례는 대학교장과 대학장으로 구분한다.

② “대학교장”은 학교 설립자, 재임중인 법인이사장 및 총장이 사망한 경우의 장의를 말한다.

③ “대학장”은 본교에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재직 중 사망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 이외에도 본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자에 대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3조 (장례위원회) ① 대학교장 및 대학장의 장례행사를 원만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교목실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과 유가족 대표 1인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장은 대학교장인 경우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대학장의 경우 사망인이 교원인 경우에는 소속대학 학장을, 직원인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9. 8. 1., 2021. 3. 1.)

③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장례절차에 관한 사항
2.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례에 관한 사항

제4조 (장례비용) ① 대학교장의 경우 장례와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을 대학에서 부담한다.

② 대학장의 경우 영결식 소요경비, 장례 차량비 및 부고 게재비의 일부를 대학에서 부담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별도로 필요한 경비는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5조 (주무부서)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업무는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사망인의 소속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.

제6조 (유족지원)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본교 재학 중인 직계자녀 또는 사망 후 3년 이내에 입학하는 직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졸업 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연수는 4년(건축학과는 5년)을 초과하지 못한다.

제7조 (기타) 이 규정 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5. 1)

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행정지원처’를 ‘사무처’로 한다.

부 칙(2019. 8. 1)

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'사무처'를 '총무처'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